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1483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148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 28 선고 2002나5582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B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율)

【피고, 피상고인】 신B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홍CA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 28. 선고 2002나558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한DA씨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개별보증'용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소외 회사에게 개별보증의 대상이 아닌 근대출 또는 회전대출 방식의 종합통장 자동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용보증서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된 최초의 대출이 잔존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최초 실행된 대출금 이외에 추가로 대출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개별보증과 근보증은 각기 신용보증서에 첨부되는 약관과 면책기준이 달라 보증책임의 부담 정도가 다르고 그 보증료도 상이하므로 개별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과 근보증의 대상이 되는 종합통장 자동대출 사이에는 채무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신용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직원 박EA이 대출 실행 전에 피고의 직원에게 개별보증용인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자동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자동대출로 취급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가 대출을 실행한 후 피고에게 대출과목이 '기업일반자금대출(자동대출)'로 기재된 신용보증부대출 실행통지서를 송부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별보증용인 이 사건 신용보증을 근보증용 신용보증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이를 추인 또는 면책기준에 의한 면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가 면책의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회사의 종합통장에 2000. 11. 4. 입금된 5,000만 원은 KK건설이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입금 당일 출금되었기 때문에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종합통장 자동대출약정에서 그 약정에 의한 대출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 기본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충당에 있어 입금된 자금의 출처나 종류를 제한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종합통장에 입금된 자금은 출처나 종류를 불문하고 대출상환대전으로 볼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종합통장 자동대출약정의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종합통장대출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